「2024년 중소·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」 포상 후보자 모집공고(연장)

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,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기업인, 공직자 및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유공 표창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.

2024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① 포상목적 및 대상

□ 포상목적

○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·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·기업인 등을 포상·격려하여 규제혁신·기업활력 추동력 확보

□ 포상대상

- 상훈법령 등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, 규제혁신,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·단체
 - *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, 규제애로 발굴·개선 우수 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, 협·단체 포함
 - * 후보자 추천주체(입법·사법·행정·공공기관, 협회, 민간기업 등)가 최종 검증 후 추천 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허용
 - ※ **포상제외 대상** :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(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89호)」 및「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등에 따름

② 포상규모 및 선정방법

- □ 포상규모(안) :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45점 내외
 - * 2023년 포상규모 : 기재부장관(5점), 중기부장관(40점)

□ 선정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·개선, 기업 현장 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
 - *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어야 하며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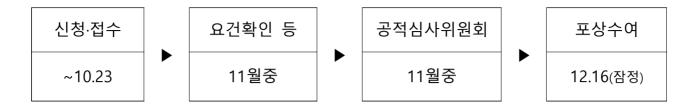
□ 선정절차

유공 후보자를 자가, 학회, 경제단체,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
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, 공적평가·심사 등을 거쳐 선정

③ 신청 및 접수

- □ 신청기간 : <u>'24. 10. 23(수)</u>, 18:00까지
- □ 제출서류 : [붙임2] 참조
 - ① <서식 1, 2, 3, 4, 5, 6> 각 1부
 - * 반드시 붙임 서식 (12~22페이지)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- *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,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
 - *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,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
 - ② 재직증명서(공무원이 아닌 경우)
 - ③ 추천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·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(10년 내)
 - ④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□ 신청방법 : 전자메일(이메일) 접수 원칙
 - * 제출처 : sanalang@korea.kr [원본 스캔파일(PDF)과 한글파일(hwp) 모두 송부]
 - ※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(신청마감일(10.4)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)
 - 주소 : (30121)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·중견기업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
- □ 문 의 처 :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(☎044-204-7172)

④ 추진일정



- □ 요건확인 등 : '24. 11월중
 -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및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신청·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공적에 대한 서류·현장·종합 평가 등 실시
 - 추천제한 사유 등 조회
 - * 결격사유: 범죄경력,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, 세금 체납 등
- □ 공적심사위원회 : '24. 11월중
 - 요건확인 및 제한사유 조회 등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
- □ 포상 수여 : '24. 12. 16(잠정)
 - 중소기업 규제발굴·개선, 기업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확산 행사

붙임1

포상기준 및 포상추천 제한

1. 포상기준

□ 대상별 수공 기간

- ※ 기간산정 : 수공 발생 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, 포상 추천일(후보자 접수 마감일)까지 산정
- (일반국민)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(공무원) 실근무기간^{*} 2년 이상,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* 실근무기간 :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,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
- (외국인)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
- (단체)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

2. 표창 제한 및 추천 제한 사항

□ 이중표창 금지

-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
 - * 예시 : ① 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
 - ② 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

□ 재포상 금지

-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 (수여일)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 (추천일) 될 수 있음
- □ **공통 추천제한**(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)
 - 1)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2)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3)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
- 4)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)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(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)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
- 6) "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"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- 7)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(다만,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
□ **대상별 추천 제한** ("정부포상 업무지침" 준용)

① 일반국민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2) 형사처분
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-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3) 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 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*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「시행규칙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나)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 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

-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「시행령」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나)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https://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2 공무원

- 1)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2) 형사처분
- 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 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78조의2제1항
- 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- 마. 「국유재산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-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- 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5.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- 6. 「공직자윤리법」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- 3)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- 가)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나)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 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- 4)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 - *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- 5)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

취소된 적이 있는 자

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6)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("일반국민"과 동일)
- 7) 사회적 물의 등 유발("일반국민"과 동일)

3 외국인

- 1) 과거 망언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2)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,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4 단체

- 1)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 - *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2)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- 3) 최근 3년 이내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 - *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- 4)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("일반국민"과 동일)
 - * 단,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)의 경우,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
- 5)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파단되는 단체

붙임2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

□ 제출서류

- 1) "포상 신청 기관 현황" 1부<서식1>
- 2) "공적 개요서" 1부<서식2>
- 3) "공적조서" 1부<서식3-1(개인), 3-2(단체)>
- 4) "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용)" 1부<공무원인 경우, 서식4> *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
- 5) "장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" 1부<서식5>
- 6) "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" 1부<서식6>
- 7) (단체의 경우)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8) (필요시) 공적 증빙서류 등

□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

-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**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**
-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사실을 알려야 함
- 기관에서 추천 시 징계처분 및 조사·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하여야 함
- 공무원인 경우,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, 이력위조 및 변조시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

- **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**하고,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- o 재직공무원의 경우,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
 - *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,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
-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"정부포상업무지침('24.1.1.시행)"에 의함
 - *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(www.sanghun.go.kr> 상훈제도안내 > 정부포상업무지침)

□ (서식 1) 포상 신청 기관 현황

포상 신청(추천) 기관 현황

참가분야		중소·중견	년기업 규 <i>처</i>	베혁신 유 [.]	공자
기관명			대표자	명	
사업자등록번호			법인등록1	번호	
전 화			팩 스	•	
소재지	()				
	성 명			직 위	
담당자	전 화			팩 스	
	휴대폰			e-mail	

□ (서식 2) 공적개요서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공 적 개 요

연번	추천 부서	소속 (부서)	직급	성명 (생년, 나이)	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(최근 2년 이상)	후보자 추천 사유	수공기간	과거 포상 (장관 표창 이상)
1	00과	후보자의 소속 작성	(예시)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	OOO (88, 34세)	(공무원) ■ OO과('22.3월~) ○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■ OO과('20.1월~'22.3월) ○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(일반국민) ■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	(예시) ■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 에 추천함	0년 0월	-

□ (서식 3-1) 공적조서(개인/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공 적 조 서

성 명		(한자)						
주 민 번 호		군번(군인의 경우)						
(생 년 월 일)		국적(외국인의 경우)						
주 소 (연 락 처)								
직 업		소속	법적 명칭 (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)					
직 위		직 급 · 계 급						
추 천 훈 격	장관표창	추 천 순 위						
공 적 분 야	규제 혁신	공 적 기 간						
	※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, 수식어는 지양※ ~~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조 사 자							
소속								
직 위 (직 급 · 계 급)		성 명	(서명 또는 인)					
위의 기록이 사실	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	년	월 일						
추천관	직 위	성 명	(서명 또는 인)					

- *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(휴직기간 전체 제외) 기준
- * 조사자 : 각 과장, 행정실장(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)
- * 추천관 : 각 국장, 지방청장, 교장(대상자가 실·국장급인 경우 차관)

주요 경력						
연 월 일	연월일 이력사항					
	<u>공적기간과 일치</u> 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					
'	과거 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		
수여일(연 월 일)	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					
	공 적 내 용					

□ (서식 3-2) 공적조서(단체)

공 적 조 서

단		체	명							
주			소							
법 사	인 업	번 자 번	호 호		대	표 전	화	번	호	
대			명							
주	민	번	호							
주			소							
소			속		연		락		처	
추	천	훈	격	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	추	천	순	-	위	
공	적	분	O‡	산업경제	공	적	フ		간	
- XX	※ ~~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									
*	~~에 	기여	함 으							
※	~~에 	기여	함 <u>의</u> 속		나 지	ŀ				
소		기여 급·계	속		사 지 성	ŀ			큠	(서명 또는 인)
소 직	위 (직	급 · 계	속 급)			H			ㅁ	(서명 또는 인)
소 직	위 (직	급 · 계	속 급)	조 /		ļ- OE	ļ		명	(서명 또는 인)

- * 조사자 : 각 과장, 행정실장(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)
- * 추천관 : 각 국장, 지방청장, 교장(대상자가 실·국장급인 경우 차관)

주요 이력						
연 월 일	이력사항					
	<u>공적기간과 일치</u> 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					
	과거 포상기록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		
수여일(연 월 일)	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					
	공 적 내 용					

< 공적조서 작성 요령 >

- 1. 성명 란은 한글 및 한자를 기재
- 2. 군번 란은 군인일 경우에만 작성
- 3. 주소는 개인 거주지(집 주소) 기재
- 4. 직업란은 회사원, 공무원, 기업인 등으로 기입
- 5. 소속은 소속단체와 부서명을 자세히 기입
- 6. 직급 · 계급은 1급, 2급, 3급 등의 직급 또는 계급을 기입
- 7. 공적기간은 연, 월, 일까지 정확히 기입하고, 2개 이상의 공적기간이 있을 시에는 구분 기입(2024년 10월 23일 기준)
- 8. 공적요지는 70자 이내로 작성(띄어쓰기 포함)
- 9. 조사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함(예시 : 부장, 대표이사 등)
- 10. 주요 경력란은 시작과 종료의 연, 월, 일까지 정확히 기재
- 11. 과거포상기록은 연, 월, 일까지 정확히 기재
- 12. 공적사항은 구체적인 실적(수치 등)을 서술형으로 작성, 사례 포함 * 막연한 문구(많이, 크게, 상당히 등), 사진 삽입 등은 지양
- 13. 주요 경력란의 연, 월, 일까지 정확히 기재

□ (서식 4) 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만 해당)

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

1) 소속:	기관				2) 직	위			3)직 급		
4) 44	n4	한글			5)생년 5	월일				(만 서	1)	
4) 성	명	한자			6)군번(군인)						
	▮재직자	정L	년퇴직 □ '	명예퇴즈	🗌 의원	^일 면직	 기 E	타				
공무원의	종류		재	직 기 7	간		12)특	정 직		~ (년·	월 일)	
8) 일 빈	<u> </u> 직	~	(년 월	늴)			13)교	원		~ (년	월 일)	
9) 별 정	성 직	~	(년 1	<u>월</u>)			14)군	인	-	~ (년	월 일)	
10)기 능	5 직	~	(년 1	월)			15)군 ·	무 원		~ (년	월 일)	
11)고 용	용 직	~	(년 1	<u>월</u>)			16)기E	F()		~ (년	월 일)	
합	계 ⑦					냗	9	일				
17)제 외 :	기간						직위해?	제 : ~	(년	년 월 일	<u>!</u>)	
합 7	# U	1				냗	년 월	일				
18)실 재	직기간(⑦-	- ())	년	월	일		19)추천	훈격				
		I					I					
00/¥1741 :	÷1 HJ	종	류 		일 자		21)과거.	표창		포 상	명 	수여일자
20)징계,	엉믤	해 '	당없음				(모범,총	흥리표창이싱	<u>}</u>)			
22) 작	성 자(인	l U사담당	자)				23) 확	인 자(인	 !사딛	 남당관)		
직급			성명		(5	<u>기</u>)	직급			성명		(인)
			U = 1 0 0	U = 1 = 0	1 H J L	I 큰 d al	TJ 등I 드I		д O	0 51015	·L	
	<u> </u>	레 기새	사양는 인	^トノ 녹천				게 기록하	지금	글 확인임	Ⅎ.	
					년	월	일					
			フ	관	명 :			(직인)				

* 작성자 : 본부 (인사담당자), 소속기관 (인사담당자, 지역정책과장·행정실장)

* 확인자 : 본부 (운영지원과장), 소속기관 (지역정책과장·행정실장)

* 기관명 : 본부 (중소벤처기업부), 소속기관 (해당 기관명)

□ (서식 5) 장관 포상 동의 및 확인서(공무원, 일반국민 공통)

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 우보기

성 명		
소속(주소)	직 위(급)	

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(이하 '공적심사규정')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 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 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- ※ 특히. 아래의 '신고의무 사항'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공적심사규정」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 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현행 '정부포상 업무지침' 상 추천이 제한되는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형사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
- 2. 「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」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4. . .

성명 (서명)

<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>

중소벤처기업부(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)에서는 장관표창 업무*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관련 법령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2항, 제17조제2항)

*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,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,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,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

□ 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·이용기간
성명, 군번(군인), 국적(외국인), 주소, 소속, 직업, 직위, 직급·계급, 공적요지, 공적내용, 공적기간, 주요경력, 과거 포상기록	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	· 공적조서 및 의결서 : 준영구 · 추천서 및 동의서 : 5년 · 그 밖의 증명서류 : 1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위와	간이	개인정보름	수집·이용하는데	동의하십니까?

동의		미동의	
0 1	l	10.1	
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・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·이용기간
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※ 근거: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27조	· 공적조서 및 의결서 : 준영구 · 추천서 및 동의서 : 5년 · 그 밖의 중명서류 : 1년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	위와	같이	고유식별정보를	처리하는데	동의하십니끼	⊦?
--	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-	----

드시	1	피도시	
1 동의	l	미 동의	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항목	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보유·이용기간	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행정안전부(행정정보공동이용)	추천제한 사유 확인	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	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7	날이 개인정보를	제3자에게	제공하는데	동의하십니까?	동의	미동의	

2024년 월 일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 귀중

□ (서식 6) 개인·기업정보 활용 동의서

개인·기업정보 활용 동의서

- 1. 중소기업음부즈만·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 「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」포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,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,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- 2. 중소기업옴부즈만·IBK기업은행이 주관하는 「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」 포상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 - 가. 활용할 정보 : 기업현황, 대표자(신청.담당자) 연락처 및 신청유공자 주민번호, 포상관련사항
 - 나. 활용의 목적 : 포상관리, 결과통보
 - 다. 동의서 효력기간 :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지원제도 종료일까지
- ※ 상기 개인·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포상관리 업무에 활용되며,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2024년 월 일

기업명:

신청유공자 : (서명 또는 인)

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귀하